

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와 시민들을 위해 동행해 주시는 사랑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님 여러분. 안녕하십니까? 행정자치위원회 한 기 영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
- 본 조례안의 제7조 14호를 신설하여 서울시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. 조사결과 서울시 난임 직원은 28명으로 예상되며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이 난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

- 난임으로 인한 우울감은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우울증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. 이에 난임 직원에 대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- 난임 시술비 지원의 대상을 서울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로 확대하고 난임 시술비 청구서류 제출에 의한 지원금 지급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 난임 수술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본 의원이 제출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난임과 시술비용으로 어려워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울시와 시민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